

일제말 電力國家管理體制의 수립*

吳 鎮 錫**

요약

본고는 1940년대 전반 전력국가관리의 수립을 대상으로 정책 결정의 주체에 주목하여 정책의 원안이 등장하여 최종안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글이다. 일본정부는 1930년대 말 電氣廳의 발족과 日本發送電의 설립과 함께 전력국가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엔블록 전체의 전력국가관리체제 형성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일원적 통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체신국 관료들은 기존 전력통제정책의 성과를 들어 이를 회피하였다. 그 배경에는 체신국 관료들의 '낙하산인사(天降)'를 통해 형성된 관료-자본 유착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국가관리 시행요구가 거세지면서 총독부로서도 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총독부는 주무부서를 식산국으로 이관하여 식산국장의 주도 아래 전력국가관리를 입안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력업자는 전력국가관리의 실시가 현실로 다가오자 되도록 국가적 통제를 회피하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총독부는 朝鮮臨時電力調査會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해 1943년에 朝鮮電力管理令이 공포되고 발송전 통합을 맡을 국책회사로서 朝鮮電業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조선전업의 소유와 경영은 사실상 日本窒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국책회사의 재벌 위탁은 재벌과 국가권력의 결합을 이르는 '官財抱合'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전력국가관리체제, 전력통제정책, 조선임시전력조사회, 조선 전력관리령, 朝鮮電業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e-mail: jamesoh@pcu.ac.kr

I. 序 言

일제강점기 한국의 전력산업은 두 번의 계기를 맞아 획기적으로 변모하였다.¹⁾ 첫 번째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電力統制政策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발전(특히 수력발전)과 장거리 고압송전을 민간에 의존하면 난개발과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전에 개발계획을 세워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송전간선은 국영으로 하고 발전·배전·송전지선은 민영에 맡기기로 하는 원칙을 세웠으며, 각 지역에 난립한 민영 배전회사들은 5개 지역별로 나누어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후 원래의 정책 의도대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북부지역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속속 등장하면서 각지의 소규모 화력발전소는 폐지되었고, 서부와 남부지역의 주요 소비지까지 전기를 보낼 장거리 고압송전선이 대거 설치되었으며, 각지의 배전회사는 지역별로 합병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력산업은 1940년대에 들어서 다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계기는 일본에서 시작된 電力國家管理體制의 수립이었다. 당시 일본은 전력기근에 대처하기 위해 국책회사 설립을 통한 발송전 통제와 함께 지역별 배전회사 통합을 시작했으며, 그러한 정책을 한국에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전력산업은 애초 제기된 송전간선 국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각지의 수력 개발을 위해 발송전회사들이 난립하고 있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전력국영론이 강하게 대두되어 '제2차 電力統制政策' 즉 전력국가관리가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발송전 통합을 위해 朝鮮水電, 朝鮮送電, 富寧水電 3개사를 모체로 朝鮮電業을 창립하였고, 이후 이 회사에 나머지 발송전회사 6개사를 매각 혹은 합병시켜 통합을 완료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통합이 진행되던 배전회사도 최종적으

1) 堀和生, 『植民地朝鮮의 電力業と統制政策-1930年以後を中心に』, 『日本史研究』 265, 1984(堀和生, 『朝鮮工業化의 史的分析』, 有斐閣, 1995에 재수록); 金景林, 『1930년대 植民地 朝鮮의 電氣事業』, 『史學研究』 42, 한국사학회, 1990; 김경림, 『식민지시기 독점적 전기사업체제의 형성』, 『梨大史苑』 32, 1999; 김경림, 『식민지시기 조선의 독점적 전기 수급구조와 공업구조의 기형화』, 『梨花史學研究』 28, 2001; 張基鉉, 『植民地期 電力事業과 工業化의 展開』,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7; 오선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전력시스템 전환-기업용 대형 수력발전소의 등장과 전력망 체계의 구축』, 『한국과학사학회지』 30-1, 2008.

로 京城電氣, 南鮮電氣, 西鮮電氣, 北鮮電氣의 4개 회사로 통합을 완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하 한국의 전력산업 동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력통제정책과 함께 1940년대에 형성된 전력국가관리체제의 형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력통제정책과 그 후 전력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축적해 왔지만,²⁾ 1940년대 전력국가관리체제의 형성과 전력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³⁾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일본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발송전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朝鮮電業을 설립한 과정을 밝히고, 이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거의 전적으로 日本窒素에 맡겼던 사실을 지적했다. 국가와 독점자본의 유착이라는 시각에서 이 시기 전력국가관리의 특징을 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전력국가관리체제의 성립을 1930년대 초의 전력통제정책 연장선 위에서 간단하게 살피어 국영론이 등장한 배경과 '제2차 전력통제정책' 즉 전력국가관리가 조선전업의 설립으로 귀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 말하자면 정책 결정의 주체에 주목하여 정책형성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입체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던 것이다.

만약 정책의 성립 과정을 자세히 규명하지 않으면 자칫 전력국가관리체제가 일본정부의 요구에 의해 단기간에 간단히 성립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1939년에 電氣廳 발족과 日本發送電의 설립과 함께 '제1차 전력국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41년에는 일본발송전의 강화와 배전회사 강제통합 등의 '제2차 전력국가관리'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에서는 1943년에 朝鮮電力管理會가 공포되기 전까지 전력국가관리체제 수립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간의 연구는 그 과정과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필자는 정책의 원안에서 최종안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전력국가관리체제의 수립이 일본에 비해 상당한 시차(time lag)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는 데에 본고의

2) 각주 1)의 논문 참조.

3) 전력국가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堀和生, 「植民地朝鮮の電力業と統制政策-1930年以後を中心に-」, 『日本史研究』 265, 1984(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1995에 재수록); 김경림, 「日帝末 戰時下 朝鮮의 電力統制政策」, 『國史館論叢』 66, 1996;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제4편 제10장 참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무를 맡았던 총독부 관료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⁴⁾ 일단 총독부 관료들의 원래 구상을 확인한 뒤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과정에 의하여 원안이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전력국가관리체제 수립과정에는 일본정부-조선총독부-전력업계 삼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엔블록 전체를 염두에 둔 전력국가관리를 위해 조선총독부에 일원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지만, 총독부 관료는 병참기지정책을 내세워 블록 내에서의 위치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낙하산인사[天降]'를 통해 성립한 관료-자본 유착관계, 이른바 '관치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치통제'를 유지하고자 했다.⁵⁾ 그리고 전력업자는 되도록 국가적 통제를 회피하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수립된 전력국가관리체제는 이러한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틀 속에서 정책 형성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전력국가관리 수립과정을 시야에 넣어 분석에 임해야 한다. 이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제하 한국의 전력국가관리체제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II. 전력국영론의 등장과 통제정책의 강화 모색

1937년 中日戰爭 발발 이후 일제는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總動員體制'로 전환하였다. 臨時資金調整法(1937.9), 國家總動員法(1938.5) 등을 기반으로 자금, 물자, 인력을 끌어 모아 전쟁수행을 뒷받침할 군수산업에

4) 조선총독부 관료에 대해서는 木村健二, 『朝鮮總督府經濟官僚の人事と政策』, 『近代日本の經濟官僚』, 日本經濟評論社, 2000;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三元社, 2008, 8장; 방기중,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 강화정책-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특질과 관련하여』, 『東方學志』 138, 2007;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이형식, 『아마나시총독시대의 조선총독부』,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하)』, 제이앤씨, 2010 참조.

5) 방기중, 앞의 글, 2007.

집중 배분하는 경제재편성이 추진되었고, 금융, 생산, 분배, 소비, 가격, 노무 등 경제의 모든 면에서 국가의 전면적 개입을 통한 강력한 통제가 시작되었다.⁶⁾ 이른바 ‘戰時統制經濟體制’의 구축이었다. 새로운 경제체제의 성격은 단순히 산업별 개별자본의 사적 통제에 의한 부분적, 소극적 ‘經濟統制’가 아니라 국가의 전면적, 적극적, 직접 통제를 통한 ‘高度國防國家’의 창출, ‘經濟新體制’로의 질적 전환을 의미했다. 장기전하 日滿支블록 건설을 목표로 했던 일제는 한국경제의 재편성을 요구했고, 조선총독부는 병참기지, 대륙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이에 호응했다. 인력 동원을 위한 皇國臣民化, 內鮮一體 이데올로기가 극단적으로 강요되는 가운데, 군수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電力動員이 필요해졌고,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전력통제의 강화 주장이 등장한 이유였다.

그런데 전력통제정책은 원래 1930년대 초 宇垣一成 총독시기에 정무총감 今井田清徳과 전기과장 今井賴次郎의 주도로 처음 성립된 정책이었다. 당시 관민합동의 朝鮮電氣事業調査會(1931.10)의 심의를 거쳐 주요 수력발전소의 개발에 따라 한반도 전역의 수요지에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을 구축할 ‘발전 및 송전망 계획’(1932.3)이 확정되었고, 朝鮮電氣事業令의 제정(1932.2)을 비롯한 일련의 법안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의 주요 원칙도 확정되었다. 발송전을 분리하여 송전간선은 국영으로 하고 발전 및 배전, 송전지선은 민영에 맡기기로 하였고, 향후 배전사업은 전국을 5개 구역(南鮮, 湖南, 中鮮, 西鮮, 北鮮)으로 나누어 통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는 전력개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에 착수하는 가운데 전원개발을 맡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

6) 小林英夫, 『總力戰體制와 植民地』, 『日帝末期 파시즘과 韓國社會』, 청아출판사, 1988; 金仁鎬, 『太平洋戰爭期(1940~1945) 日帝의 조선 공업통제와 생산력 확충』, 『韓國史研究』 90, 1995; 김인호, 『太平洋戰爭期 朝鮮工業研究』, 新書苑, 1998;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裒城浚, 『전시체제기(1937~45) 纖維工業의 통제와 工業組合』, 『韓國民族運動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7; 裒城浚, 『일제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韓國文化』 27, 2001;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방기중,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2005; 방기중,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강화정책-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특질과 관련하여』, 『東方學志』 138, 2007 참조.

었다.

【표 1】 전력통제정책에 의한 배전회사의 통합 과정

北鮮合同 電氣	1939.11.* 합병	1938.4. 14 3사 합동	朝鮮電氣 會寧電氣 雄基電氣	1934.4.30 양수 : 城津電氣, 1937.3.1 합병 : 茂山電氣
		咸南合同電氣	元山水力電氣(상호변경) 1935.11.1 합병 : 北靑電燈, 咸南電氣, 北鮮電 力, 1936.10.1 양수 : 大興電氣 咸興支店(咸興電 氣), 1937.11.1 합병 : 惠山鎭電氣	
西鮮合同 電氣	朝鮮電氣興業(상호변경) 1933.12.6 합병 : 鎭南浦電氣, 沙里院電氣(沙里院面營), 西鮮電氣(海州電氣), 朝 鮮送電(安州電氣), 1936.11.1 합병 : 開城電氣, 1936.11.1 양수 : 江界電氣, 1937.1.1 합병 : 新義州電氣(鮮滿殖産, 定州電氣, 宣川電氣), 1937.4.* 합병 : 長湍電氣, 1938.1.1 양수 : 平壤府營電氣			
京城電氣	日韓瓦斯電氣(상호변경 : 漢城電氣, 韓美電氣) 1912.7.10 매수 : 仁川電氣, 1928.9.24 매수 : 水原電氣 1939.4.1 매수 : 春川電氣, 1942.1.1 합병 : 金剛山電氣鐵道			
南鮮合同 電氣	1937.4. 10 6사 합동	朝鮮瓦斯 電氣	韓國瓦斯電氣(상호변경, 釜山軌道, 釜山電燈) 1927.1.17 양수 : 密陽電氣, 1930.8.16 양수 : 晉州電氣 (三千浦電氣, 泗川電氣), 1935.3.8 양수 : 咸安電氣, 1935.10.22 양수 : 京城電氣 鎭海支店, 京城電氣 馬山支 店	
		大興電氣	大邱電氣(상호변경) 1918.8.4 합병 : 咸興電氣, 1920.7.7 합병 : 光州電氣, 1920.10.22 합병 : 浦項電氣, 1926.6.2 합병 : 統營電 氣, 1928.1.30 합병 : 全南電氣, 1932.10.21 합병 : 靈 光電氣, 南原電氣, 1936.4.15 합병 : 固城電氣, 安東電氣, 1936.2.26 : 慶州電氣, 1936.10.1 합병 : 九龍浦電氣, 甘浦電氣, 河東電氣, 蔚山電氣(蔚山本府電氣), 盈德電氣, 巨 濟電氣, 麗水電氣, 濟州電氣, 順天電氣, 筏橋電氣	
		南朝鮮電氣	1927.8.30 합병 상호변경 : 群山電氣, 全北電氣(中外電氣 全州支店(全州電氣)), 1927.10.24 합병 : 井邑電氣, 1929.4.6 합병 : 江景電氣	
		天安電燈	1936.11.1 합병 : 溫陽電氣, 平澤電氣, 忠南電氣, 瑞山電 氣, 大川電氣	
		木浦電燈	1936.10.1 합병 : 昭和電氣, 寶城電氣, 莞島電氣, 1936.11.1 합병 : 長興電氣	
		大田電氣	1919.4.11 양수 : 淸州電氣, 1929.5.20 합병 : 忠州電 氣, 1936.10.1 합병 : 公州電氣, 利長電氣	
1938.9.7 합병 : 城南電氣, 1939.8.* 합병 : 江陵電氣				

자료: 條木敬雄, 『躍進途上にある朝鮮電氣事業の概観』, 朝鮮電氣協會, 1937, 45~54쪽; 『朝
鮮電氣要覽』, 각년도판.

비고: ()안은 합병, 양수 혹은 개편한 회사.

1930년대 전력산업은 크게 보아 이 원칙에 따라 개편되고 있었다.⁷⁾ 우선 배전회사들은 원래 5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합하기로 했으나 통합과정에서 4개 구역(南鮮, 中鮮, 西鮮, 北鮮)으로 변경되어 부단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먼저 북부지방에서는 1933년 12월 朝鮮電氣興業과 鎭南浦電氣, 沙里院電氣, 西鮮電氣, 朝鮮送電의 합병으로 西鮮合同電氣(이하 西電)가 등장한 이래, 1935년 11월 元山水力電氣와 北靑電燈, 咸南電氣, 北鮮電力의 합병으로 咸南合同電氣, 1938년 4월 朝鮮電氣, 會寧電氣, 雄基電氣의 합병으로 北鮮合同電氣(이하 北電) 같은 거대 배전업체가 등장하였고, 남부지방에서는 朝鮮瓦斯電氣, 大興電氣, 南朝鮮電氣, 天安電燈, 木浦電燈, 大田電氣 등을 중심으로 인근의 군소전기회사들을 합병하다가 1937년 4월 大興電氣를 중심으로 6개 회사가 합병해 南鮮合同電氣(이하 南電)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1939년 4월에는 京城電氣(이하 京電)가 춘천전기를 매수하고 1939년 11월에는 북전이 咸南合同電氣를 합병해, 중부지역의 金剛山電氣鐵道を 제외하면, 북전, 서전, 경전, 남전 등 4개사 중심의 배전통합이 일차 완성되었다(표 1). 배전회사들의 통합에 따라 각 지역의 소규모 화력발전소들은 폐지되었고, 배전회사들은 대규모 수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국적인 송전망에 따라 배급받아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력소매회사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한편, 발전 및 송전망 계획에 따라 대규모 수력·화력발전소의 개발이 속속 이어졌다. 1920년대 후반에 허가된 부전강발전소의 성공에 따라 총독부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日本窒素(이하 日窒)가 늘어나는 자사 공장의 전력수요에 충당할 새로운 전원개발을 회구하자, 1933년 4월 총독부는 원래 三菱에게 부여했던 장진강 개발권을 회수해 생산전력의 1/2을 공공용으로 공급하도록 조건을 붙여 일질에게 허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질에서는 그해 5월 長津江水力電氣(후에 朝鮮水力電氣로 개칭함)를 설립해 즉

7) 今井賴次郎, 『電氣事業』, 『朝鮮鐵道協會會誌』 15-3, 1936.3, 2~6쪽; 安達遂, 『朝鮮に於ける發送電網の現狀及其の對策』, 『朝鮮通信』 216~217, 1936.6~1936.7; 『統制される朝鮮の電氣事業』, 『朝鮮公論』 24-12, 1936.12, 13~15쪽; 條木敬雄, 『躍進途上にある朝鮮電氣事業の概觀』, 朝鮮電氣協會, 1937; 今井賴次郎, 『朝鮮に於ける電氣事業一斑(1)~(2)』, 『朝鮮鐵道協會會誌』 16-10~16-11, 1937.10~11; 『朝鮮電氣事業の現段階』, 『朝鮮公論』 25-12, 1937.12, 42~44쪽; 『電氣事業統制の成果を觀る』, 『朝鮮公論』 25-12, 1937.12, 45~47쪽; 岸謙, 『朝鮮に於ける電氣事業』, 『京電』 3-2, 1939.6, 23~57쪽.

각 전원개발에 착수했다.⁸⁾ 그리고 남쪽에서는 총독부가 日本電力聯盟을 유치해 동척, 배전회사들과의 합동으로 영월탄광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케 했다. 1935년 7월에는 이를 담당할 朝鮮電力이 설립되었다. 북쪽의 장진강수력발전소와 남쪽의 영월화력발전소를 축으로 시작된 전원개발은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1936년 3월에 장진강수전이 허천강개발권을 획득해 발생전력량의 1/3을 자가용으로 확보하였고, 1937년 9월에 일질은 만주국, 동척과 합동으로 압록강의 수풍, 의주, 운봉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한 朝鮮鴨綠江水力電氣를 설립하고 발생전력의 1/6을 자가용으로 확보했다.

한편, 국책회사의 전력업 진출도 이어졌다. 1936년 8월에는 東洋拓殖(이하 東拓)이 두만강 개발을 위해 富寧水力電氣를 설립하였고, 1938년 1월에는 동척이 昭和電工과 합자로 장진강 하류를 개발하는 江界水力電氣를 설립하였으며, 1940년 3월에는 역시 동척이 조선전력과 합동으로 섬진강, 금강을 개발하려는 南鮮水力電氣를 설립하였다. 한편, 朝鮮殖産銀行(이하 殖銀)도 자회사인 日本高周波重工業의 전력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화전과 청평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1939년 2월에 漢江水力電氣를 창립하였다(표 2).

뒤늦게 동척과 식은을 비롯한 국책회사가 발전회사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물자부족 때문에 발전소를 제때 완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완공된 발전소의 대부분은 일질 소유였기 때문에 한국내 전력업계에서 일질의 위치는 막강했다. 1942년경 일질은 기설 수력발전력의 94.5%(공사중인 것은 77.2%)를 점유했고 실제발전량의 90%, 사용전력량의 61.7%를 차지할 정도였다.⁹⁾

거대한 수력·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라 발전소와 수요지를 연결할 장거리 고압송전망의 구축도 진행되었다.¹⁰⁾ 우선 장진강발전소의 전력을 서선지역과 경성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을 건설할 목적으로 朝鮮送電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1935년 11월에 장진강-평양을 연결하는 154kV급 송

8) 일질의 전원개발에 대해서는 姜在彦 編,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 1985, 제3장 참조.

9) 『朝鮮電力事業の責務加重と統制強化』, 『朝鮮産業の決戦再編成』, 東洋經濟新報社, 1943, 36~38쪽.

10) 『韓國電氣百年史上』, 韓國電力公社, 1989, 315~322쪽.

【표 2】 주요 발송전회사의 영업상태(1942년)

회사명	설립일	자본금	주요 발송전설비	자본구성	특이사항
朝鮮水力 電氣	1933.5.11	30,000만원 (30,000만원)	長津江(326,500kW) 虛川江(171,100kW) 220kV급 365.4km 110kV급 511.1km	60만주, 대주주 日本窒素肥料	1941.7 상호변 경(元 長津江水 電)
朝鮮送電	1934.5.16	3,000만원 (30,000만원)	下岐川-平壤(199.9km) 평양-경성(187.5km)	60만주 중 朝鮮水電(263,600), 동척 (101,800), 서선헌전(100,200), 일 본질소비료(47,600), 경성전기 (41,000)*, 북선헌전(32,000)	1940.5 증자
朝鮮電力	1935.7.1	3,000만원 (2,250만원)	寧越火力(107,000kW) 영월-대구(169.8km) 상주-대전(64.7km) 대구-진영(66.1km)**	60만주 중 동척(224,100), 남선헌전 (345,600),日電證券(17,300)	1939.2 日本電 力聯盟 탈퇴
富寧水力 電氣	1936.8.17	1,000만원 (500만원)	富寧川(28,000kW)	20만주 중 동척(199,400)	발생전력을 朝 鮮電氣 冶金에 공급
朝鮮鴨綠江 水力電氣	1937.9.7	10,000만원	水豊(700,000kW) 義州(200,000kW) 雲峰(500,000kW) 기타(584,000kW)	200만주 중 만주국(999,000), 조선 수전(400,000), 동척(400,000), 조 선송전(200,000), 永井四郎(1,000)	
江界水力 電氣	1938.1.25	10,000만원 (7,000만원)	장진강하류 (305,400kW)	200만주 중 동척(1,499,300), 소화 전공(199,500), 남선헌전 (100,000),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00,000), 발송전공업(50,000), 동경전등(49,900)	발생전력을 朝 鮮製鐵, 신규경 금속공업용전원 에 충당
漢江水力 電氣	1939.2.1	2,500만원 (1,250만원)	화천(81,000kW) 청평(39,600kW)	50만주 중 조선식산은행(80,000), 경춘철도(80,000), 일본고주파중공업 (80,000), 조선신탁(20,000), 조선 저축은행(20,000), 小林采男 (20,000), 경성전기(10,000)*	경인지방에 승 전, 각종산업수 요에 충당
南鮮水力 電氣	1940.3.30	2,000만원 (2,000만원)	삼진강(27,700kW) 금강(40,720kW)	40만주 중 동척(199,700), 조선전력 (199,200)	
北鮮水力 電氣	1942.8.21	10,000만원 (2,500만원)	豆滿江 지류 西頭水(312,000kW)	200만주 중 朝鮮水電(1,999,200)	

자료: 『電氣事業概況』, 朝鮮總督府, 1942.1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 東洋經濟新報社, 1942; 『營業報告書』: 『朝鮮産業の決戰再編成』, 東洋經濟新報社, 1943; 『第30回 電氣事業要覽』, 朝鮮總督府殖産局, 1943.

비고: 자본금의 ()안은 불입자본금. *는 원래 금강산전기철도 소유주식이었으나 1942년 1월 합병에 따라 경성전기 소유주식이 되었음. **는 1942년 현재 공사중임.

전선 199.9km를 건설하였고, 1937년 12월에 평양-경성을 연결하는 154kV급 송전선 187.5km를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남쪽에서는 朝鮮電力이 직접 송전망 건설에 착수해 영월에서 대구, 대전, 진영을 연결하는 154kV급 송전선 300.6km를 건설하였다. 북선지방에서는 조선수전이 장진강발전소로부터 청진, 단천 등지를 연결하는 110kV급 송전선

511.1km와 허천강발전소로부터 청진, 흥남 등지를 연결하는 220kV급 송전선 365.4km를 부설했다. 요컨대, 대체로 북선과 남선에서는 조선수전과 조선전력이 송전사업을 발전사업과 겸하고 있었고, 서선과 중선에서는 민영회사인 조선송전이 송전사업을 맡고 있었다.

1930년대 초 전력통제정책의 수립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던 한국의 전력산업은 통제정책의 실시 초기부터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통제정책의 주요 원칙의 하나였던 ‘송전간선 국영’ 원칙이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총독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송전간선 국영 원칙을 유보하고, 그 대신 발전회사와 배전회사가 참여하는 민영회사인 조선송전을 설립해 송전망 건설을 담당케 하였다. 총독부는 조선송전이 설립에 참여한 발전회사와 배전회사의 상호 견제 하에 경영되므로 공익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이 회사의 설립과 경영은 일질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때문에 유력한 수요처의 하나인 경성전기는 조선송전 설립과정에서 일질 주도에 불만을 품고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 총독부의 의도가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선지방과 남선지방의 경우에는 발전회사가 송전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송전 분리의 원칙마저 깨져 있었다.

송전선 부설을 민영에만 의존할 경우 총독부의 정책 목적에 부합한 송전망 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은 총독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이는 산금정책 추진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1930년대 후반 총독부는 국제수지 적자와 정화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일체의 금 수요 증대에 따라 朝鮮産金令과 産金5個年計劃을 통해 금의 산출을 늘리고 수집을 강화하는 산금정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¹¹⁾ 이에 따라 금 매입가격 인상, 탐광 및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산도로 개설, 자금대출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되었는데, 특히 광산 채굴과 정련 작업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긴요했다. 특히 광산 채굴과 정련 작업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긴요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송전선 부설에는 다액의 자금이 소요되었고, 민간 전기회사들은 공사비 부담과 폐광에 따른 투자 손실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총독부는 금

11) 朴基柱, 『1930年代 朝鮮産金政策에 關한 研究』, 『經濟史學』 12, 1988; 박현, 『조선총독부의 戰時經濟政策, 1937~1945』,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9.

광까지 직접 송전선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른바 ‘國有産金送電線’으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4년간 도합 5,300여만원이 투입되어 66kV급 송전선 2,077.6km와 22kV급 1,203.9km이 건설되어 동급 전체 송전선의 각각 52.2%와 25.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¹²⁾ 총독부는 늘어나는 산금송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38년 4월에 山金係를 신설하였고,¹³⁾ 1940년 3월에는 전기과를 전기제1과와 전기제2과로 분리해 전기제2과에 국유산금송전선의 건설 및 보수 업무를 맡겼다.¹⁴⁾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건설한 국유산금송전선은 대개 광산지역까지의 송전지선이었지 송전간선은 아니었다. 그리고 운용마저 민간회사에 위임해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國有民營’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전력의 영월화력발전소 운전이 여의치 않아 남부지역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총독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풍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고압송전선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평-대전 간 154kV급 송전선 건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¹⁵⁾ 이른바 ‘南北連絡送電幹線’이었다. 이 노선은 1941년 3월에 착공되어 1941년 11월 1일에는 부평-천안구간이 일단 준공되어 경전에서 운영하는 수색-부평선(66kV)과 남전에서 담당한 천안-대전선(66kV)과 연결하여 임시 개통되었다.¹⁶⁾ 이렇게 보면, 애초 전력통제정책의 수립시에 송전간선은 국영으로 하기로 원칙을 정했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부평-대전 간의 남북연락송전간선만이 이 원칙에 따라 건설되었고 나머지는 민간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총독부의 송전간선 국영 원칙은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발전과 관련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개발된 발전지점이 대부분 북쪽에 편재되어 있어서 남쪽은 저렴한 수력전기의 혜택을 입지 못한 채 화력발전에 의존해 남쪽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유

12)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199~217쪽.

13) 『朝鮮商工新聞』 1938.3.29.

14) 『朝鮮總督府官報』 제3948호, 1940.3.20; 『每日新報』 1940.3.21.

15) 『朝鮮電氣協會雜誌』 30-3, 1941.3, 54~55쪽; 『朝鮮電氣協會雜誌』 30-6, 1941.6, 52~53쪽; 『朝鮮電氣協會雜誌』 30-8, 1941.8, 43~44쪽; 『朝鮮電氣協會雜誌』 30-10, 1941.10, 38~39쪽.

16) 『每日新報』 1941.10.23, 11.2, 11.5. 1943년 10월 4일에 부평-대전 구간은 조전선업에 의해서 154kV급으로 승압되었다. 『每日新報』 1943.10.8.

지되고 있었다. 또한 일질이 발전과 수요의 대부분을 장악함에 따라 일질과 다른 산업자본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었다. 일질은 어렵게 개발한 전력을 일부만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공공용으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에 불만을 가졌고,¹⁷⁾ 다른 산업자본들은, 우량한 발전소를 장악한 일질이 저렴한 전기를 자사의 전력 소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자유로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을 가졌다. 그러한 사정은 日本高周波重工業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¹⁸⁾ 高周波製鍊法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금속생산에 뛰어난 일본고주파중공업은 소요 전력량 확보를 둘러싸고 일질계인 장진강수전과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독자적인 전원개발을 열망해 모회사인 식은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을 동원해 漢江水力電氣의 설립에 나섰던 것이다.

【표 3】 제3차 수력조사에 의한 수력발전능력

조사 시점	구분	지점수	발전력(kW)	세분	지점수	발전력(kW)
1939년 6월말	기허가수력	37	2,041,350	발전 개시	17	550,850
				공사시행중 공사미착수	20	1,490,500
	미허가수력	108	2,521,850	미허가수력	108	2,521,850
	합계	145	4,563,200	합계	145	4,563,200
1944년 7월말	기허가수력	51	2,828,610	발전 개시	31	1,285,990
				공사시행중	11	1,119,400
				공사미착수	9	423,220
	미허가수력	109	2,158,610	조사 완료	39	1,264,860
				조사 미완	70	903,320
합계	160	4,996,750	합계	160	4,996,750	

자료: 『朝鮮電氣統制ニ關スル意見書』, 逡信局電氣課, 1939.9(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第86回 帝國議會說明資料』,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23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

비고: 국경하천의 발전력은 1/2만 계산됨.

한편, 당시 일질 이외에 다른 발전회사들의 상당수는 공기 지연이나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 강계수전이나 한강수전, 남선수전은 자재 입수난과

17) “죽자고 공장용 전력을 위해 발전소를 만들면 고스란히 공공용으로 충당되어 버린다. 그 구멍을 메우려고 발전소를 만들면, 다시…….” 久保田豊, 『財閥回顧錄 6』, 大韓書籍公社, 1983, 46쪽.

18) 林茂樹, 『南朝鮮最大の電源開發』, 『有賀さんの事蹟と思い出』, 同編纂會, 1955, 202~204쪽; 井原潤次郎, 『高周波と私』, 위의 책, 367~375쪽.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었고,¹⁹⁾ 영월화력을 경영하던 조선전력은 석탄의 일본 적출을 중시하는 日本電力聯盟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하는 현지 배전회사측의 경영방침을 둘러싼 대립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 결국 양측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1939년 1월에 일본 전력연맹이 임원과 자본을 조선전력에서 철수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이후 조선전력은 무배당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다.

셋째, 향후 개발 예정인 수력전원의 경제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문제였다. 1936년부터 한만국경의 압록강, 두만강을 비롯하여 각지의 하천을 대상으로 제3차 수력조사가 실시된 결과 제2차 수력조사 결과(294만kW)에 비해 발전능력이 크게 늘었음이 확인되었다.²⁰⁾ 1939년 6월말 현재 145개 지점에서 456만kW이나 조사되었고, 1944년 7월말에는 160개 지점 500만kW에 달했다. 그러나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 발전지점은 1939년 6월 말 현재 108개 지점 252만kW에 달했고, 1944년에도 여전히 216만kW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허가수력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경제성이 우수한 전원이 이미 개발됨에 따라 향후 개발될 전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는 전시통제경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재, 기술,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전시인플레이션 하에서 공사비도 급증하고 있었다. 경제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사중인 발전소가 개통되면 원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든지, 기존의 방식대로 민간 기업가에게 전원개발을 맡길 경우 이익을 고려하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향후 적극적인 전원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시경제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경제성이 낮은 수력지점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총독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 『朝鮮電氣協會雜誌』 30-3, 1941.3, 54쪽.

20) 제3차 수력조사가 일단 종료된 이후 1940년부터 제4차 수력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河合和男, 『第二次水力調査と朝鮮總督府官僚の水力認識』,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는 원래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3차 수력조사가 계획을 변경하여 해방이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1939년과 1944년의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로 보아도 수력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당시 전기과장도 한국의 수력전기 특성을 소개하면서 '제3차 수력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角永清, 『朝鮮電力資源の特質と價值』, 『朝鮮』 352, 1944. 9, 66~71쪽.

넷째, 1930년대 후반에 배전회사들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원래의 총독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조선송전 설립과정에서 경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총독부와 경전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이후 배전 통합 과정은 한때 한국 최대의 전기회사였던 경전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었다. 그 결과 원래 南鮮, 湖南, 中鮮, 西鮮, 北鮮 등 5개 지역으로 통합하려던 계획은 南鮮, 中鮮, 西鮮, 北鮮 등 4개 지역으로 수정되었고, 경전은 1939년 4월 춘천전기를 매수할 때까지 단 한 곳의 전기회사도 통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발·송·배전을 겸영하는 金剛山電氣鐵道는 일찍부터 경전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양사의 합병은 경전과 총독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야 1942년 1월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로써 배전회사들의 통합은 최종 완료되었다.

한편, 당시 일본의 전력국가관리 시행에 따른 외부적 요인도 전력통제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배경이 되었다. 만주사변과 금수출재금지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전환한 일본경제는 공업생산이 급속도로 회복하는 한편 전쟁의 확대에 따라 군수산업의 생산력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생산력 발전의 기반이 될 저렴한 전기의 풍부한 공급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²¹⁾ 이에 따라 군부와 혁신관료 사이에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기도하려는 ‘전력국영론’이 제기되어 臨時電力調査會(1937. 10)를 설치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케 하였다. 결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송전을 담당할 특수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電力國策要綱이 최종 결정되었고, 1938년 초 전력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정비한 뒤 그해 5월 국가관리의 시행기관으로 電力管理準備局(1939년 4월 電氣廳으로 개편)이 발족되었으며, 1939년 4월 민간전기사업자들의 설비가 강제로 출자되어 日本發送電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일본발송전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역원의 임명과 중요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해 사실상 일본정부가 운영을 맡았다. 이른바 ‘제1차 電力國家管理’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일본발송전은 발송전 설비 전체를 장악하

21) 『電力百年史』, 政經社, 1980; 電氣事業講座編輯委員會 編纂, 『電氣事業發達史』, 電力新報社, 1996; 梅本哲世, 『戰前日本資本主義と電力』, 八朔社, 2000; 橘川武郎, 『日本電力業發展の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中瀬哲史, 『日本電氣事業經營史』, 日本經濟評論社, 2005, 3장 참조.

지 못하고 기설수력발전설비를 제외한 채 화력발전설비와 고압송전선을 중심으로 인수해 전 발전력의 약 40%를 점유하는 데에 그쳤고, 재정난 때문에 배전사업은 종래대로 민영 또는 공영을 유지하되 구역별로 정리통합을 유도해 가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전력국가관리가 성립하자 일본정부는 엔블록 내의 통제 강화를 위해서 조선총독부에 보다 강력한 전력통제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²²⁾ 당시 총독부 전기과에서 객관적 정세의 추이를 보아 종래의 전력정책에 재비판, 재검토가 요청되는 시기에 도달했으며 종래 이상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²³⁾ 그러나 총독부는 전력국가관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완강히 견지했다.²⁴⁾ 전력통제의 목적은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을 원활하게 배급하는 데에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의 성과는 대체로 양호하므로 일본처럼 국책회사 설립을 통한 발송전 통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전사업의 국영화도 거부했다. 송전사업이 국영이 되면 민간기업들은 향후 수력개발에 주저할 것이며 현재의 재정상태로 보아도 국영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발송전사업 또는 배전사업의 정리통합은 현재 법제상 근거 없이 행정운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일찍이 백지상태에서 합리적 전력개발계획에 따라 전원을 개발하고 대송전망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의 민영 사업자들은 전력통제방책에 따라 설립된 '準國策會社'로서 이미 한국의 발송전부문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배전 통제, 주파수 통일, 송전간선 국영 원칙 등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처럼 종래의 무통제로 인한 다수 사업자들의 난립, 상호 이해관계의 착종 문제를 국책회사 설립을 통해 일거에 정리 통합하려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일본정부의 전력국가관리 시행, 즉 일원적 통제 요구를 거부한 채 현재제의 연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22) 『朝鮮商工新聞』 1937.12.11, 1938.1.7.

23) 『朝鮮の電氣事業』, 朝鮮總督府逕信局電氣課, 1938.8, 3·53쪽(民族問題研究所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24) 『朝鮮の電氣事業』, 朝鮮總督府逕信局電氣課, 1938.8(民族問題研究所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坂上滿壽雄, 『電力統制』, 『朝鮮逕信』 246, 1938.11, 4~19쪽; 『朝鮮商工新聞』 1938.1.27, 2.13.

총독부 관료들이 전력국가관리를 회피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국 내 수력 전기의 양적, 질적 우수성과 그간의 개발 성과에 있었다. 한국은 수차례에 걸친 수력조사 결과 양적인 면에서 굴지의 수력포장지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된 수력발전소는 종래의 수로식이 아니라 광활한 저수지를 갖춘 堤堰式이나 流域變更式을 채택해 갈수기에도 정시전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력의 질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다.²⁵⁾ 이는 강우량이 대체로 적고 대부분 하기에 집중되는 악조건 속에서, 일본에 비해 수력의 비중이 매우 높고 갈수기를 대비한 보급 화력이 근소하면서도, 1939년 후반과 1940년 전반에 일본이 심각한 전력기근으로 고통을 겪을 때에 한국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수력발전소는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자가 풍부하고 1개 지점에서 거대한 발전력을 생산해 내는 대규모 발전인 탓에 투입되는 기술자, 노동자의 절약이 가능해 발전력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전력원가도 싸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 수력전기의 우수성은 ‘한국과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이처럼 당시 체신국 전기과 내에서는 그간 한국의 전력산업은 성적이 좋아 일본과 사정이 다르므로 전력국가관리 같은 ‘급진적’인 방법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었다. 1930년대 초 전력통제정책 수립의 주역이었던 전기과장 今井賴次郎(1929.12~1937.7)이나 그 밑에서 전기사업 조사회 간사를 지내며 전력통제정책의 수립을 보좌했고 今井의 뒤를 이어 전기과장에 취임했던 坂上滿壽雄(1937.7~1938.9)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²⁶⁾ 이러한 생각이 전기과 관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원래 체신국 전기과 관료는 업무의 특성상 전기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이 요구되었고, 이 때문에 고등문관시험을 통해 선발한 文官(書記-副事務官-事務官) 보다는 技術官僚(技手-技師)에 의해 업무가 주도되고 있었

25) 한국 내 수력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特色を有する半島の發電水力』, 『朝鮮公論』 24-12, 1936.12, 16쪽; 安達遂, 『朝鮮に於ける發電資源の特色』, 『朝鮮公論』 24-12, 1936.12, 26~29쪽; 坂上滿壽雄, 『發電水力資源』, 『朝鮮公論』 26-11, 1938.11, 12~17쪽; 玉置正治, 『朝鮮の水力と其の開發の特異性』, 『朝鮮電氣雜誌』 30-11, 1941.11, 11~14쪽; 加藤韓三, 『躍進途上にある朝鮮の電氣事業』, 『朝鮮電氣雜誌』 31-5, 1942.5, 21~31쪽; 安達遂, 『朝鮮に於ける發電水力の展望』, 『朝鮮電氣雜誌』 32-10, 1943.10, 2~12쪽 참조.

26)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관료들의 입면일은 安龍植 編, 『朝鮮總督府下 日本人官僚 研究Ⅲ』,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2003 참조.

다.²⁷⁾ 원래 문관은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여러 부서들을 거치기 때문에 특성 부서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어려웠지만,²⁸⁾ 기술관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임 때까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했던 것이다. 이들은 업무의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며 강한 결속력을 유지했던 것 같다. 그 중심인물이 바로 今井 전기과장이었다.²⁹⁾ 그는 동경 제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기술관료 출신으로서, 탁월한 업무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1930년대 초 전력통제정책 수립을 주도해 今井田 정무총감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으며, 무려 7년여간 전기과장의 직책을 수행하며 부하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획득하고 있었다. 게다가 문관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전기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기술관료와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다. 今井의 뒤를 이어 전기과장이 되었던 坂上滿壽雄이나 그와 함께 조선전기사업령 초안 작성의 실무를 맡았던 淺原貞紀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³⁰⁾ 전기과 관료들 중 일부는 퇴임 후에 각급 전력회사로 자리를 옮겨 총독부와 업계를 연결해 주는 파이프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른바 ‘낙하산인사(天降)’였다. 예를 들어 禰答院規矩雄 기사는 퇴임 후 서선합동전기 기사장이 되었고, 高橋金吾 기사는 한강수전의 전기부장에 취임했다. 今井賴次郎이 전기과장에 재직시에 부하 중에서 서선합동전기와 북선합동전기에 자리를 잡은 사람만 5명이나 되었다. 今井賴次郎도 퇴임 후에는 서선합동전기 사장과 조선송전 취체역에 취임했다.

今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전기과 관료들은 대체로 전력국가관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전력국가관

27) 이하 전기과 관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가 없는 한 安達遂, 『回想記』, 『朝鮮半島電氣事業の思い出』, 景福電友會, 1983, 4~15쪽 참조. 1938년 4월 현재 체신국 전기과는 과장 이하 통할자, 계장, 계원 등 7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중 문관은 17명에 불과했다. 계원(서기) 14명, 계장(서기) 1명, 통할자(부사무관) 1명, 과장(사무관) 1명이었다. 반면 기술관료는 계원(기수) 44명, 계장(기사 혹은 기수) 8명, 통할자(기사) 3명이었다. 당시 과장은 문관이었지만, 실무의 중심인 통할자나 계장은 거의 대부분 기술관료가 차지했던 것이다. 『逡信局電氣課機構整備』, 『朝鮮電氣雜誌』 27-1, 1938.4, 118~120쪽.

28) 岡本眞希子, 앞의 책, 550쪽.

29) 阿部薰, 『朝鮮人物選集』, 民衆時論出版部, 1934, 855~857쪽; 鳴元勸, 『朝鮮財界の人々』, 京城日報社, 1941, 14~15쪽;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578~582쪽; 『朝鮮商工新聞』 1939.1.12.

30) 淺原フミ, 『電氣事業令と主人』, 『朝鮮半島電氣事業の思い出』, 景福電友會, 1983, 28~29쪽; 坂上梅野, 『電氣事業令の思い出』, 위의 책, 78쪽.

리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총독부 내에서도 殖産局을 중심으로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식산국과 체신국은 상호 대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中小金山의 자가발전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식산국 광산과장 石田千太郎(1933.8~1938.8)과 체신국 전기과장 今井賴次郎이 대립한 적이 있었고, 일각에서 전기는 산업상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과를 식산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電氣課移管論’이 부상하기도 했다.³¹⁾ 이러한 가운데 1938년 9월 13일에 전기과장 坂上이 급서하는 일이 발생했다.³²⁾ 후임은 전력국가관리 시행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무려 두 달 가까이 후임자를 물색하지 못하였다. 인선을 둘러싸고 얼마나 갈등이 치열했는지를 보여준다. 마침내 1938년 11월 10일 문관 白石光治郎(1938.11~1940.3)이 전기과장에 되었다.³³⁾ 白石은 1922년 동경제대 법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경기도 지방과장, 강원도 재무부장, 평북 재무부장, 총독부 경무국 사무관, 평북 경찰부장, 경남 경찰부장, 평남 내무부장 등을 거친 정통 엘리트 관료였다.³⁴⁾ 그의 경력으로 보면 도지사 임명이 통상적인 승진 코스였는데 갑작스레 전기과장에 임명되었던 것이다.³⁵⁾ 전임 坂上에 비해서도 고참인 데다가 전기과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그가 전기과장에 임명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다.³⁶⁾

이를 계기로 전기과 내에 전력국가관리 실시에 대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白石은 전력국가관리에 부정적인 전기과 관료들을 제치고 양장서서 강력한 전력통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던 것이다.³⁷⁾

31) 鶴岡五月, 『重責の新電氣課長』, 『朝鮮公論』 26-11, 1938.11, 80~82쪽.

32) 『毎日新報』 1938.9.14.

33) 『朝鮮商工新聞』 1938.11.8.

34) 阿部薰, 『朝鮮人物選集』, 民衆時論出版部, 1934.

35) 白石의 고등문관시험 임관동기인 石田千太郎은 비슷한 때에 평안남도지사가 되었다. 나중에 白石도 평안북도지사로 영전했다.

36) 白石이 평북 경찰부장을 할 때 坂上은 그 아래에서 약 8개월간 경무과장을 지낸 적도 있었다. 『朝鮮電氣雜誌』 27-8, 1938.11, 73쪽.

37) 체신국 전기과장 白石光治郎, 『年頭所感』, 『朝鮮電氣雜誌』 28-1, 1939.1, 6~8쪽; 白石光治郎, 『電氣事業의 現狀』, 『朝鮮通信』 248, 1939.1, 25~30쪽; 白石光治郎, 『朝鮮電氣事業의 特異性』, 『朝鮮公論』 27-10, 1939.10, 11~14쪽; 白石光治郎, 『時局下に於ける 電力』, 『朝鮮電氣雜誌』 29-1, 1940.1, 11~13쪽; 白石光治郎, 『朝鮮의 電力資源과 電力政策』, 『朝鮮』 299, 1940.4, 1~6쪽; 『朝鮮電氣統制』

그는 중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요금정책의 재검토(원가주의의 시정, 산업별 정책요금제 이행 등)를 통해 전면적으로 전력동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 아래 과거 송전사업의 통제방식이 과도한 편법에 의존해 왔던 사실을 인정해 이를 속히 시정해야 하며, 향후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개발된 발전소보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전원이라도 일정한 통제 아래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자본을 유치하여 전원을 개발하고 일부 잉여전력을 일반에 공급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타 수요에 대한 전기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을 고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송전간선의 국유국영, 발송전사업을 담당할 민영 특수회사의 설립, 송전간선과 보조발전을 담당할 민영 특수회사의 설립과 수력발전회사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명령권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III. 朝鮮電力管理令 공포와 朝鮮電業의 설립

전기과장의 교체에 따라 전기과 일각에서 전력국가관리의 시행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기과 내에서는 통제강화론에 대한 반대가 대세를 이루었다.³⁸⁾ 전기과 내 쉐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기술관료 출신들이 반대세력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白石 전기과장과 대립했던 것 같다.³⁹⁾

그런데 白石의 상관인 체신국장 山田忠次는 기술관료들과 견해를 같이 했다. 원래 山田은 1930년대 초 전력통제정책 수립의 주역이었던 今井田 정무총감의 체신성 후배로서 그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⁴⁰⁾ 체신성 관료 생활 내내 今井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 체신

二關スル意見書』, 遞信局電氣課, 1939.9(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38) 『朝鮮電氣雜誌』 29-10, 1940.10, 48쪽.

39) 기술관료 출신인 安達遂는 훗날 白石에 대해서 “불만한 업적이 없었다”며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安達遂, 앞의 글.

40) 山田忠次, 『今井田さんの思ひ出』, 『朝鮮遞信』 266, 1940.7, 17~20쪽.

국장에 임명된 일도 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山田은 사실상 今井田 노선에 입각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는 坂上 전기과장이 급서했을 때 그의 후임에 기술관료를 임명하고자 했을 정도로 기술관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⁴¹⁾

체신국장 山田이 직접 나서 전력국가관리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⁴²⁾ 그는 ‘제2차 전력통제’(전력국가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원개발이 먼저며 통제는 나중의 일이라며 반박했고, 현재의 통제방식이 하등 부적합하지 않다고 옹호했다. 형태만 통제하는 일은 百害無益하며 민간업자의 왕성한 기업심을 국가목적에 합치시켜 선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영에 국가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므로 국가관리나 특수회사 설립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山田 체신국장과 白石 전기과장 사이에도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 3월 9일 白石이 갑작스레 전기과장에서 하차하고 체신국 서무과장 淺原貞紀가 이를 겸직한 데에서 그렇게 생각된다.⁴³⁾ 淺原은 문관이지만 체신국 서무과, 전기과, 감리과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체신통’으로서 전기과 기술관료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게다가 1940년 3월 20일 전기과가 전기제1과와 전기제2과로 분리될 때 淺原은 제1과장, 기술관료인 기사 田中重郎이 제2과장에 임명되었다. 사실상 기술관료를 과장에 임명하려던 山田의 구상이 일부 실현된 셈이었다. 그리고 1940년 9월 2일에는 임시로 전기제1과장 자리에 앉았던 淺原의 뒤를 이어 문관 西田豊彦(1940.9.2~1942.9.30)이 임명되었다.

한편, 전력업계도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 강화와 더불어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전력국가관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⁴⁴⁾ 앞서 언급했듯이 퇴임한 체신국 관료들이 ‘낙하산인사[天降]’를 통해 대거 전력회사에 진출해 있

41) 『朝鮮商工新聞』 1938.11.8. 白石 전기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安達遼도 山田에 대해서는 감사와 존경을 표하였다. 安達遼, 앞의 글.

42) 『朝鮮商工新聞』 1938.3.31: 山田忠次, 『時局と朝鮮の通信事業』, 『朝鮮通信』 248, 1939.1. 2~9쪽; 『朝鮮電氣雜誌』 30-1, 1941.1. 67쪽; 『朝鮮電氣雜誌』 30-2, 1941.2. 73~74쪽.

43) 『朝鮮總督府官報』 제3944호, 1940.3.15. 白石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북경출장소장에 임명되었고, 1941년 11월 19일에 다시 돌아와 평북지사에 임명되었다. 『每日新報』 1940.3.14; 『朝鮮總督府官報』 제452호, 1941.11.26.

44) 『朝鮮商工新聞』 1937.12.22, 1938.1.29.

었기 때문에 업계와 체신국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체신국장을 지낸 山本犀藏(1928.1~1933.12)은 퇴임 후 서선합동 전기 사장과 조선송전 취체역에 취임했으며, 그 뒤를 이은 井上清(1933.12~1936.7) 역시 퇴임 후에 조선전력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가 나중에는 남조선수력전기 사장과 강릉전기 취체역을 겸임하기에 이르렀다. 전기과장 今井도 山本犀藏의 뒤를 이어 서선합동전기 사장과 조선송전 취체역에 취임했다. 또한 1939년 7월 이후에는 현직 체신국장이 전력회사들로 구성된 조선전기협회의 회장직을 겸직하는 게 관행으로 정착되었을 정도였다. 전력국가관리는 이러한 관료-자본 유착관계를 깰 수 있는 위험요소였다. 체신국 관료들과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사정은 통제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하였다. 주지하듯 1941년 말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따라 전쟁은 확대일로를 달려 군수산업 생산력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고, 앞서 일본에서 실시한 '제1차 전력국가관리'가 시행되자마자 문제점을 노정해 다시 통제를 더욱 강화한 '제2차 電力國家管理'로 이어졌던 것이다.⁴⁵⁾ 일본에서는 1939년 후반부터 이상갈수, 석탄부족, 탄질저하에 따라 심각한 '전력기근'(전력부족 사태)이 발생해 關西지방에 대정전 사태(1940.1)를 초래했을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일본정부는 國家總動員法에 근거해 1940년 2월 電力調整令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⁴⁶⁾ 그리고 전력기근은 일본발송전의 업적 부진과 배전회사의 지지부진한 통합 때문이라며 통제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결국 1941년 초 관계법안이 정비되어 종래 출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존의 수력발전설비와 기타 주요전력설비를 日本發送電株式會社에 귀속시켜 발전설비의 대부분(수력 70%, 화력 60% 정도)을 장악케 하였고, 1941년 8월에는 配電統制令을 공포해 배전회사의 강제통합에 착수했다. 1942년 4월에 70개사를 기초로 지역별로 9개의 특

45) 『内地に於ける發送電及配電統制の沿革と現狀』,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14~19쪽; 『電力百年史』, 政經社, 1980; 電氣事業講座編輯委員會 編纂, 『電氣事業發達史』, 電力新報社, 1996; 橘川武郎, 『日本電力業發展の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中瀬哲史, 『日本電氣事業經營史』, 日本經濟評論社, 2005, 4장 참조.

46) 監理課, 『内地に於ける電力不足の實狀と電力調整令の趣旨及解説』, 『京電』 4-1, 1940.3, 34~52쪽.

수배전회사를 설립해 1943년까지 통합을 완료했다.

일본에서의 전력국가관리 강화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전기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電力調整令이 시행되면서 1939년 10월 27일부터 한국에서도 동시에 실시되기에 이르렀고, 47) 일본정부는 대동아공영권 전체에서 일관된 전력정책의 수립을 위해 전기청 내에 大東亞電力調査室을 특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전력국가관리 실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48)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존의 민영회사 체제와 ‘자치통제’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던 전기과 관료들이라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이들은 일본의 전력국가관리 강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대세로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체신국에서 1941년 9월 電力調査室(실장 安達遂)을 설치하고 49) 국책안 마련에 착수해 ‘電力國家統制案要綱’(이하 통제요강)을 작성한 것은 이때문이었다. 통제요강에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정비 요청에 따라 전력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배급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국가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발송전을 담당할 ‘朝鮮電力供給株式會社(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50) 기존 전력회사로부터 신규 수력발전설비(기존 수력발전설비 제외)와 주요 화력발전설비, 그리고 주요 송전설비(100kV 이상)를 현물로 출자케 해 자본금 1억5천만원의 특수회사를 설립하고 특수회사에는 자금조달의 편의, 이익배당의 정부 보증(6%), 조세 감면,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특권을 부여하는 한편, 특수회사에 속하지 않는 기설수력발전설비의 발생 전력을 특수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일괄구입토록 하였다. 배전회사는 종전대로 경영토록 하되 경영이념을 자유주의·영

47) 『朝鮮總督府官報』 제3832호, 1939.10.27; 山田忠次, 『電氣調整令の施行に就いて』, 『朝鮮電氣雜誌』 28-11, 1939.11, 5~12쪽. 단, 한국에서는 전력사정이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

48) 企劃院調査官 加藤四郎, 『大同亞國土計劃と電力』, 『大同亞國土計劃を語る』, 日刊工業新聞社, 1942, 110~139쪽.

49) 『毎日新報』 1941.9.18. 전력조사실의 차석은 木村三郎(기사)이 임명되었고, 구성원은 中村長一郎(기사), 江口信平, 高橋敏夫, 町田政雄(이상 서기), 坪田邁(기사) 등이었다. 安達遂, 앞의 글.

50) 『電力國家統制ニ關スル諸要綱』, 朝鮮總督府遞信局(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이 자료의 정확한 작성연도는 미상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보아 1941년경이었던 것 같다.

리주의에서 국가주의·공익주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었다. 또한 총독부는 전력수급, 발전 및 송전설비의 건설계획, 전기요금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전력 배급에 관한 지령권을 획득하며 電氣局을 설립해 전력통제사무를 관장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제1차 전력국가관리' 정책과 전기청, 일본발송전주식회사를 그대로 모방해 통제요강을 작성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력통제정책의 강화, 즉 전력국가관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체신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특수사정을 내세워 반드시 일본을 답습할 필요는 없고 '半島獨自의 統制'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⁵¹⁾ 한편, 殖産局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전력동원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력통제정책을 전력국가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체신국과 대립하였다.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당시 병참기지정책을 통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엔블록 내에서 한국의 위치를 강화하고자 했던 총독부로서는 이러한 부서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총독부는 전력국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41년 11월 체신국 전기제1과와 전기제2과를 식산국에 이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⁵²⁾ 이제 식산국장 上瀧基(1941.11.19~1943.12.1)의 지휘 아래 전력산업 재편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上瀧은 전력국가관리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전기과 조직을 장악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이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전기과 관료의 교체를 시도했다. 1942년 9월에는 전기제1과장을 西田豊彦에서 角永清(1942.9.30~1945.3.28)으로 바꾸고, 今井의 노선을 추종하는 기술관료 安達遂를 電力調査室長에서 해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⁵³⁾ 그리고 전기제1과와 전기제2과

51) 『毎日新報』 1941.7.24; 『朝鮮電氣雜誌』 30-7, 1941.7, 55~56·58쪽; 『朝鮮電氣雜誌』 30-10, 1941.10, 39~40쪽.

52) 『朝鮮電氣雜誌』 30-11, 1941.11, 39·41쪽; 김민철, 『전시체제하(1937~1945) 식민지 행정기구의 변화』, 『韓國史學報』 14, 2003.

53) 이 시기에 들어 安達遂는 전력국가관리의 추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今井田 노선에 입각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해임된 듯하다. 총독부기사 安達遂, 『電力問題の動向』, 『朝鮮電氣雜誌』 31-10, 1942.10, 7~19쪽. 훗날 安達遂는 자신의 통제이념이 '조선전력관리령'의 이념과 다르지 않았는데도 해임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과장을 비롯한 주요 관료들의 사무실을 기존의 체신국제2분관에서 총독부 내 식산국장실 옆방으로 옮기도록 해 장악력을 높였다.⁵⁴⁾ 1943년 2월에는 電力調査室을 電力管理實施準備室으로 개편해 전력국가관리 준비에 가일층 박차를 가했다.⁵⁵⁾

上瀧은 기존의 전력통제정책이 ‘자유주의를 기조로 한 소극적 통제’에 머물렀다고 비판하고, 高度國防國家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방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며, 생산력 확충을 위해서는 전력의 증산과 합리적 배급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⁵⁶⁾ 따라서 과거처럼 민간기업의 영리심에 기대어 전원개발을 출원한 기업에게 발전전력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개방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원을 개발할 수 없으며, 전시통제경제 하에 자재, 자금, 기술, 노무 등이 극도로 제약된 상태에서 전력증산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력통제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의지에 따라 지정된 국방산업에 풍부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국책회사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국가적 대규모 종합경영에 기초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이른바 ‘電力國防體制’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上瀧의 구상 아래 식산국 전기과에서는 발송전 통합과 이를 담당할 특수회사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책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력국가관리는 사실상 기존 발송전 회사의 존폐와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력업계의 반발이 우려되었다. 당시 전력산업에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질은 수시로 총독부 수뇌부, 그리고 식산국장, 전기과장과 회동하며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⁵⁷⁾ 일질은 전력통제의 강화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제를 위한 통제’를 해서는 곤란하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일본발송전의 통제방식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통제정책은 생산력확충에 즉응한 활발한 전원 개발과 송배전 합리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도 ‘공고한 체제의 통합’을 주문했다. 사실상 일질 주도의 전원개발과 경영권 유

54) 『毎日新報』 1942.11.15.

55) 『朝鮮電氣雜誌』 32-4, 1943.4, 47쪽.

56) 「上瀧會長の挨拶に演達」, 『朝鮮電氣雜誌』 31-5, 1942.5, 33~36쪽; 上瀧基, 『戰時下の電氣事業』, 『朝鮮電氣雜誌』 31-10, 1942.10, 2~6쪽.

57) 이하 별다른 추가 없는 한 『毎日新報』 1942.8.13, 8.15, 8.18, 9.4, 10.1, 10.3, 10.6, 10.8, 10.16.

지를 희망했던 것이다.

일본정부와 총독부는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국가관리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대동아공영권 전체 차원에서 일관된 전력정책을 수립 지원하기 위해 정책 수행 외곽단체로서 大東亞電力懇談會를 조직하였다.⁵⁸⁾ 여기에는 일본, 한국, 만주, 화북 등 각 지역의 유력한 전력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대동아전력간담회는 이름은 간담회였지만, 일시적인 조직으로 구상된 것이 아니라 간사장, 간사 등 임원진을 선발하고 사단법인으로의 전환과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도모할 정도로 처음부터 상설 관변단체로 구상되고 있었다.

한편, 총독부는 전력국가관리 시행안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민합동의 조사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⁵⁹⁾ 이에 따라 총독부는 1942년 9월 30일 칙령 제660호로 朝鮮臨時電力調査會官制를 공포하였고,⁶⁰⁾ 정무총감을 위원장에 임명하고 총독부 관계국·과장과 각 발송전회사와 배전회사의 대표, 재계의 대표, 그리고 일본의 전 電氣廳장관 藤井崇治와 일본발송전 총재 池尾芳藏 등을 위원에 임명해 조사회 구성을 마쳤다(표 4).⁶¹⁾ 마침내 1942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朝鮮臨時電力調査會가 열렸다.⁶²⁾ 조사회는 먼저 실무관료들이 작성한 ‘發電及送電豫定計劃要綱’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발전계획 및 송전망계획과 모든 전력자원을 개발대상으로 하는 예정발전계획 및 예정송전망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향후 전력국가관리의 근간이 될 ‘電力國家管理案要綱’의 초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조사회에서는 20일 저녁에 식산국장 上瀧基가 위원장이 되고 총독부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상세한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진행과정에서 업계 일각은 초안에 들어있던 ‘감독제도의 강화’ 항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독부가 세밀하게 감독을 하려는

58) 『每日新報』 1942.6.14, 7.17, 7.25, 7.29.

59) 『每日新報』 1942.7.16, 8.6, 8.9.

60) 『朝鮮總督府官報』 제4708호, 1942.10.7.

61) 『每日新報』 1942.10.3.

62) 『朝鮮臨時電力調査會總會議事錄』, 朝鮮總督府殖産局, 1943; 殖産局電力調査室, 『朝鮮臨時電力調査會第1回委員會の跡を顧みて』, 『朝鮮電氣雜誌』 31-11, 1942.11, 2~12쪽; 岸謙, 『朝鮮に於ける電力統制の新展開』, 『京電』 6-4, 1942.11, 2~7쪽; 『毎日申報』 1942.10.21, 10.22; 『京城日報』 1492.10.21, 10.22.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일본에서는 관청이 머리, 회사는 수족에 불과하다는 평판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러한 폐해에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초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전력국가관리체제 하에서 총독부의 역할 강화에 대해 업계에서 제동을 건 것이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자구의 수정과 함께 이러한 폐해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⁶³⁾ 또한 서선합전 사장 今井賴次郎은 신설되는 국책회사의 경영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임원을 통합대상회사의 임원들을 모아서 구성하는 폐단(畝壽世帶)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그간의 경험이나 기량을 고려하여 단일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⁴⁾ 이외에도 今井은 적극적인 공사비 지원을 통해 전력 요금을 낮출 것을 주문했으며, 종래의 업계 공로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조선수전 사장 久保田豊은 특수회사의 내용과 성격, 출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관리 이후 기존산업의 추진력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고 생산이 제일이고 전력은 수단일 뿐이라고 피력했다.⁶⁵⁾

〈電力國家管理案要綱〉

1. 관리의 범위

조선총독은 발전, 송전 및 배전을 관리함. 단, 자기의 專用에 供하거나 또는 일 지방의 需用에 供하는 전기의 발전, 송전 및 배전으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것은 이를 제외하기로 함.

2. 관리의 방법

- (1) 조선총독은 새로이 특수회사를 설립하여 그 관리에 속하는 발전, 송전 및 배전 중 우선 주요한 발전 및 송전을 행하기로 함.
- (2) 조선총독은 그 관리에 속하는 주요한 발전 및 송전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특수회사에의 사업의 통합 또는 전력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출자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3) 조선총독은 특수회사의 전력설비의 건설 또는 변경의 계획 및 전력 요금 기타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로 함.
- (4) 조선총독은 그 관리에 속하는 발전, 송전 및 배전을 행하는 자에

63) 『朝鮮臨時電力調査會議ノ件』(1942.10.22), 『朝鮮電力統合關係綴』.

64) 『朝鮮臨時電力調査會議ノ件』(1942.10.22), 『朝鮮電力統合關係綴』; 『朝鮮臨時電力調査會總會議事錄』, 朝鮮總督府殖産局, 1943, 51~55쪽.

65) 『朝鮮臨時電力調査會總會議事錄』, 朝鮮總督府殖産局, 1943, 95~98쪽.

대하여 발전, 송전 및 배전에 관하여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5) 배전사업은 우선 특수회사로서 이를 행하지 않지만 전항의 명령에 따라 특수회사의 사명달성에 협력시키도록 함.

3. 특수회사의 성질

- (1) 사채발행한도의 확장, 사채의 정부보증 등 자금조달에 관하여 利便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부소유주의 後配, 배당보증, 조세의 감면, 기타 업무상 필요한 특권을 부여하기로 함.
- (2) 조선총독은 회사의 역원을 命免하고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 사채의 모집, 이익금의 처분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기로 함.
- (3) 조선총독은 국유의 전력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일부를 특수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함.

4. 감독제도의 강화(초안)

조선총독은 전력의 국가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기구를 정비하고 감독력의 강화를 도모하기로 함.

4. 관리기구의 정비(최종안)

조선총독은 전력의 국가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구를 정비하기로 함.

이러한 업계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답신안에 반영되었다. 우선 電力國家管理案要綱 초안에 들어있던 ‘감독제도의 강화’ 항목은 답신안에서는 누앙스가 다소 약한 ‘관리기구의 정비’로 바뀌고 감독기구의 정비나 감독력의 강화라는 문구는 아예 삭제되었다.⁶⁶⁾ 한편, 답신에는 초안과 별도로 업계의 요구가 〈희망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특수회사의 운영은 민간의 창의 및 경험을 활용하고, 중요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송전 통합을 진행하며, 향후 피통합회사의 자산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발송전설비 건설시에 총독부가 건설비를 부담해 전력원가를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66) 『朝鮮臨時電力調査會總會議事錄』, 朝鮮總督府殖産局, 1943, 59~60·124~126쪽.

【표 4】 전력국가관리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

朝鮮臨時電力 調査會 (1942.10.20 ~10.21)	회장	田中武雄(정무총감)
	위원	鈴木壽男(사정국장), 水田直昌(재무국장), 上瀧基**(식산국장), 鹽田正弘(농림국장), 信原聖(정보국 정보관), 奥村重正(재무국 사계과장), 角永清*(식산국 전기제1과장), 田中重朗*(식산국 전기제2과장), 池尾芳藏*(일본발송전 총재), 藤井崇治*(전 電氣廳 장관), 久保田豊*(조선수전 사장), 小倉武之助*(조선전력·남선합전 사장), 谷多喜磨*(한강수전 사장), 池邊龍一*(강계수전 사장), 今井賴次郎*(서선합전 사장), 武者鍊三*(경성전기 사장), 笹川恭三郎*(북선합전 사장), 松原純一*(조선은행 총재), 林繁藏*(식은 두취)
	간사	鈴木高麗雄, 三津田松吉, 安達遂, 加藤韓三, 高橋洋次郎, 中村長一郎, 木村三郎
朝鮮電業設立 委員會 (1943.7.9, 7.31)	위원장	田中武雄(정무총감)
	위원	江口親憲(총무국장), 新貝肇(사정국장), 水田直昌(재무국장), 上瀧基(식산국장), 早田福藏(법무국장), 丹下郁太郎(경무국장), 兵頭儂(총무국 기획실장), 田中鐵三郎(조선은행 총재), 穂積眞六郎(조선상공회의소 회두), 林繁藏(식은 두취), 池邊龍一(동척 부총재), 谷多喜磨(한강수전 사장), 松本誠(朝金聯 회장), 久保田豊(조선수전 취체역), 今井賴次郎(조선송전 취체역), 小倉武之助(조선전력 사장), 白石宗城(일질 취체역), 望月伸(부령수전 사장), 玉置正治(조선수전 취체역), 横地靜夫(조선수전 취체역)
	위원 보조	筒井竹雄, 吉良喜重, 磯崎廣行, 山地靖之, 奥村重正, 角永清, 山名酒喜男, 木野藤雄, 岡村峻, 辻桂五, 高橋英夫, 渡邊隆治, 加納富夫, 三津田松吉, 横井増治, 田中重朗, 安達遂, 加藤韓三, 高橋洋次郎, 木村三郎,
朝鮮電力評價 審査委員會 (1943.7.10, 9.17)	회장	田中武雄(정무총감)
	위원	江口親憲(총무국장), 水田直昌(재무국장), 上瀧基(식산국장), 信原聖(정보국 정보관), 兵頭儂(총무국 기획실장), 關口聰(경성세무감독국장), 田中鐵三郎(조선은행 총재), 穂積眞六郎(조선상공회의소 회두), 林繁藏(식은 두취), 人見次郎(조선무연탄 사장), 萩原彦三(조선광업진흥 사장), 伊達四雄(경성토목건축협회 회장), 鈴木武雄(경성제대 교수)
	간사	吉良喜重, 山地靖之, 奥村重正, 角永清, 山名酒喜男, 木野藤雄, 岡村峻, 辻桂五, 高橋英夫, 加納富夫, 新貝肇, 三津田松吉, 上田新, 田中重朗, 安達遂, 中村長一郎, 高橋洋次郎, 木村三郎, 寺脇宗男, 新美武, 江口信平, 高橋敏夫, 矢野誓治, 中野人土, 富野井正

자료: 『朝鮮電氣雜誌』 31-10, 1942.10, 40쪽;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38쪽; 岸謙, 「朝鮮に於ける電力統制の新展開」, 『京電』 6-4, 1942.11, 2~7쪽.

비고: *는 소위원회 위원, **는 위원장임.

임시전력조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1942년 12월 31일에는 ‘朝鮮電力國家管理實施要綱(이하 要綱)이 정식으로 각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전기회사의 합병과 사업 양수, 설비의 현물출자 등에 의해 발송전을 담당할 특수회사로 朝鮮電氣株式會社(가칭)를 설립해 전력국가관리체제를 확립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⁶⁷⁾

67) 『毎日新報』 1943.1.2.

〈朝鮮電力國家管理實施要綱〉

제1 방침

대동아공영권내에서 조선에 부하된 생산력확충 특히 초미의 급무인 경금속공업 기타 주요국방산업의 확충계획의 완수를 기하기 위하여 그 기초산업인 전기사업에 대하여 전력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요금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전력동원을 강력히 실시함은 각하의 급무임에 비추어 이에 국가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조선에서 전기사업을 고도국방국가체제에 적응시키도록 함.

제2 요령

1. 조선총독은 조선에서 발전, 송전 및 배전을 관리할 것. 단, 자가용 또는 지방적 수요로서 통제의 필요가 없는 것은 이를 제외할 것.
2. 조선총독은 전력설비의 건설계획, 전력요금 기타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거나 또는 전력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전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는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할 것.
3. 조선총독은 새로이 제령에 기초하여 특수회사인 朝鮮電氣株式會社(가칭)를 설립하고 우선 그 정한 발전 및 송전을 행할 것.
4. 조선전기주식회사는 조선에서 기존 전기회사의 통합, 사업의 양수 및 설비의 현물출자 등에 따라 이를 설립할 것.
전항의 경우에서 평가에 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공정 타당을 기할 것.
정부는 국유에 관계있는 주요전력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조선전기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할 것.
5. 조선압록강수력전기주식회사는 만주국과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조선전기주식회사에 통합하지 않음. 제령에 기초한 특수회사로 개조하여 이를 존치하고 압록강 및 도문강 본류에서 발전을 할 것.
6. 정부는 조선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채 및 배당의 보증, 조세의 감면 기타 업무상 필요한 특권을 부여할 것.
7. 조선총독부는 조선전기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인가를 받아 기타 회사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8.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전2항에 준하여 조성 감독을 할 것.

제3 조치

1. 조선총독은 본 요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함.
2. 특수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함.
3. 전기사업의 통합에 당하여서는 중요산업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전시하에 생산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논하기로 함.
4. 조선전기주식회사는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의 주식의 반수를 소유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일원적으로 운영하기로 함.⁶⁸⁾

최종적으로 결정된 요항에는 조사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와 희망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우선 특수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고, 통합·양도되는 전기회사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도록 되었으며, 만약 전력설비의 건설, 전력 요금이나 전력 수급과 관련한 총독부의 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보상받는다든 조항이 삽입되었다. 또한 전기사업의 통합은 전시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조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독제도의 강화’나 ‘관리기구의 정비’ 같은 조항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1943년 3월 30일에는 제령 5호로 電力管理令이 발표되어 전력국가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특수회사로서 朝鮮電業株式會社(명칭 변경)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 확정되었고,⁶⁹⁾ 4월 20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18호로 電力管理令施行規則, 1943년 4월 26일에는 칙령 제397호로 조선전력평가심사위원회관제가 공포되어 전력국가관리를 실현할 법적 기초가 정비되었다.⁷⁰⁾ 이른바 ‘제2차 전력통제정책’ 곧 ‘전력국가관리’의 시작을 의미했다.

전력관리령을 비롯한 일련의 법령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⁷¹⁾

68) <朝鮮電力國家管理實施要綱>, 『公文類聚 第66編』.

69) 『朝鮮總督府官報』 제4846호, 1943.3.30; 『電力管理令의公布に就て』, 『小磯統理の展望 第3輯』, 1944, 146~150쪽; 『毎日新報』 1943.3.30, 3.31.

70) 『朝鮮總督府官報』 제4863호, 1943.4.20; 『朝鮮總督府官報』 제4874호, 1943.5.5; 『毎日新報』 1943.4.21.

71) 『朝鮮電力管理令』,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48~54쪽; 『朝鮮電力管理令解説』,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54~60쪽; 『朝鮮電力管理令施行規則』,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61~69쪽; 『朝鮮電力管理令及附屬法規』, 朝鮮總督府, 1943.

우선 국가관리의 범위는 발전, 송전, 배전 전체의 일원적 관리를 목표로 하되 당분간 지방적 수요 또는 자기 專用을 위한 발·송·배전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발송전에 이어 배전까지 통합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지만, 끝내 실현하지는 못했다. 한편, 자가용을 제외한 발송전회사를 통합해 국책대행기관인 朝鮮電業株式會社를 설립하기로 하였지만, 만주국과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한 朝鮮鴨綠江水電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선압록강수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반드시 조선전업에 일괄판매하도록 하고 조선압록강수전의 실질적 운영은 조선전업 중역진이 책임져 발송전의 일원적 관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조선전업의 설립과정에서는 정황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출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고, 통합대상회사의 합병조건, 양도가격, 출자가격 등을 평가하기 위해 朝鮮電力評價審査委員會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선전업은 특수회사에 걸맞게 정부의 배당보증(6%)과 사채의 발행한도 확장(불입금액의 3배), 정부의 원리불 보증(3억 한도), 10년간 소득세 및 영업세 면제 등 갖가지 특권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경영과정에서는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했다. 우선 사장, 부사장은 총독이 임명하고 이사는 총독의 인가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해 사실상 총독부가 중역의 임명권을 장악했고, 전력설비 등의 건설 또는 변경 계획 및 전력요금, 기타 전력 수급에 관한 중요사항은 총독이 결정하도록 했다. 총독부는 감독상, 공익상 필요할 경우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조선전업은 총독부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졌으며,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해 갖가지 벌칙 조항도 구비해 두었다. 또한 회사의 업무를 감시할 회사감리관제도도 마련했다.

전력국가관리를 위한 제반 법규 정비에 따라 국가관리의 주요 방책과 조선전업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구체안도 마련되었다.⁷²⁾ 조선압록강수전을 제외한 8개사(실제로는 9개사였음)를 통합해 朝鮮電業株式會社를 설립하기로 하고, 먼저 조선수전을 중심으로 업적이 대체로 유사한 조선송전과 부령수전을 합병하고 총독부는 부평-대전간 국유남북연락선을 출자해 모태

72) 전력국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田中重朗, 『朝鮮に電氣事業の統制に就て』, 『朝鮮電氣雜誌』 32-4, 1943.4, 13~23쪽; 角永清, 『第2次電力統制に就て』, 『朝鮮』 336, 1943.5, 4~16쪽(『朝鮮電氣雜誌』 32-4, 1943.4, 1~12쪽); 角永清, 『朝鮮の電氣統制に就て』, 『朝鮮實業』 21-12, 1943.12, 18~30쪽 참조.

회사를 창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사는 전력관리령에 따라 양도 명령을 내려 모태회사에서 매수하기로 했다. 그 대신 양도회사에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액면 4.2%의 사채를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조선전업은 총괄원가주의와 업종별 요금제에 의해 중요산업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할 것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선전업은 기존에 체신국에서 작성한 통제요강에서 계획했던 특수회사 ‘朝鮮電力供給株式會社(가칭)’과는 그 성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선전력공급은 일본발송전을 그대로 모방해 기존 전력회사로부터 신규 수력발전설비(기존 수력발전설비 제외)와 주요 화력발전설비, 그리고 주요 송전설비(100kV 이상)를 현물로 출자케 해 설립될 계획이었는데, 조선전업은 조선수전을 중심으로 모든 발송전회사(조선압록강수전 제외)를 통합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전력공급의 예상자본금은 1억5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조선전업의 자본금은 약 3억4천여만원, 자산은 7억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총독부는 전력국가관리의 확정에 따라 조선전업의 설립을 급히 서둘렀다.⁷³⁾ 우선 총독부 관계관료들과 전력업계와 재계의 주요 인사들로 朝鮮電業設立委員會를 구성했고(표 4), 1943년 7월 9일에는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제1회 설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수전, 조선송전, 부령수전 3개사를 합병하고 총독부 소유의 남북연락송전간선을 현물 출자해 조선전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조선수전 60만주(50원 불입, 이하 동일), 조선송전 60만주, 부령수전 10만주 등 통합대상회사의 주식할당기준을 정하고 남북연락송전간선은 673만원으로 평가해 총독부에 13만 4,600주를 배정하기로 해 자본금을 3억4,173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신설회사의 정관도 심의했다. 다음 날(7월 10일)에는 총독부 관료들과 재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제1회 조선전력평가심사위원회를 같은 장소에서 소

73) 이하 조선전업의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朝鮮電業の創立迄』,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1~4쪽; 『朝鮮電業의 將來』,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5~8쪽; 『第1回朝鮮電業株式會社設立委員會』,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25~35쪽; 『第1回朝鮮電力評價審査委員會』,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36~38쪽; 『第2回朝鮮電業株式會社設立委員會』,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38~41쪽; 『朝鮮電業株式會社創立總會』, 『朝鮮電氣雜誌』 32-8, 1943.8. 42~47쪽; 『每日新報』 1943.7.9, 7.10, 7.11, 8.1; 『京城日報』 1943.7.10, 7.11, 8.1; 李鴻植, 『朝鮮電業株式會社十年史』, 朝鮮電業株式會社, 1955, 32~50쪽 참조.

집해 통합대상회사들의 주식 비율과 정부 출자에 대한 평가를 원안대로 확정했다(표 4). 7월 31일 오전 10시에는 遞信事業會館會議室에서 제2회 설립위원회를 열어 경과보고와 함께 기타 설립사무를 마치고, 설립위원회가 끝나자마자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선전업의 설립을 완성했다. 불과 한 달이 못 되는 기간에 설립사무를 모두 끝냈던 것이다. 총독부가 조선전업의 설립을 얼마나 급히 서둘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통합작업도 곧바로 이어졌다. 1943년 8월 31일에는 조선전업이 北鮮水電을 흡수합병했다.⁷⁴⁾ 북선수전은 조선수전이 단독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서 조선전업의 설립과 함께 조선수전의 소유주식이 조선전업에 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합병과정은 주식을 상각하고 자본금의 변동 없이 이루어졌다.⁷⁵⁾ 또한 조선전업은 1943년 9월 20일에는 강계수전, 한강수전, 남선수전, 조선전력 등 4개사의 사업일체를 자산평가액에서 채무액을 제한 118,652,668원에 양수하고, 경성전기로부터 수색-부평 간 송전선 17.9km를 장부가격 888,732원에 양도받아 통합작업을 일단락 지었다.⁷⁶⁾ 대금은 현금이 아닌 연리 4.2%의 社債를 교부하였다. 또한 1943년 11월 20일에는 전북지방에서 소규모수력발전소인 운암발전소(5,120kW)를 운영하는 자본금 250만원(불입 112만5천원)의 南朝鮮水力電氣를 합병해 통합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⁷⁷⁾

조선전업 설립과정에서 자산의 평가와 수뇌부의 구성은 최대 관심사항이었다.⁷⁸⁾ 당시 관료들은 설립과정에서 통합대상회사의 자산을 몰타기(水墮)하거나 조선전업의 임원을 통합대상회사의 임원들을 모아서 구성(寄合世帶)하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자산의 몰타기는 향후 조선전업의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고 전력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필히 막아야 할 중대 문제였다. 총독부에서는 엄격한 자산평가를 공

74) 『毎日新報』 1943.8.27.

75) <朝鮮電業株式會社臨時株主總會ノ件>(1943.8.23), 『朝鮮電力統合關係綴』.

76) 『毎日新報』 1943.9.19.

77) 李鴻植, 『朝鮮電業株式會社十年史』, 朝鮮電業株式會社, 1955, 50쪽.

78) 이하 별다른 추가 없는 한 大澤新三郎, 『電力統制への要望二ヶ條』, 『朝鮮電氣雜誌』 31-11, 1942.11, 52쪽; 田中重朗, 『朝鮮に電氣事業の統制に就て』, 『朝鮮電氣雜誌』 32-4, 1943.4, 13~23쪽; 角永清, 『第2次電力統制に就て』, 『朝鮮』 336, 1943.5, 4~16쪽(『朝鮮電氣雜誌』 32-4, 1943.4, 1~12쪽); 角永清, 『朝鮮の電氣統制に就て』, 『朝鮮實業』 21-12, 1943.12, 18~30쪽.

언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피통합회사들의 자산평가 과정에서 건설기술의 빈곤에 기초한 무효투자액이 각각 강계수전 1,175,000원, 한강수전 2,205,000원, 남선수전 227,000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제출되었으나 해당회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결국 장부가격대로 인정하기로 했고,⁷⁹⁾ 조선전력에 대해서 불량자산 350만원, 그리고 강계수전에 대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금리증가액과 본사비증가액 330만원을 감액하는 데에 만족해야 했다.⁸⁰⁾ 결국 조선전업은 4개사 합계 자산총액 378,659,099원에서 6,800,000원을 감액하고 부채 253,206,431원을 제한 나머지 118,652,668원을 사채로 교부해 매수작업을 매듭지었다. 기존 발전회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통합을 서두르기 위해 일부 몰타기를 묵인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전업이 피통합회사들의 경영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었다.

두 번째는 임원의 구성 문제였다. 기존회사들의 합병과 인수에 따른 통합회사의 속성상 인적 구성은 복잡해지고 향후 경영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총독부는 종래의 특수회사가 각 방면의 유능자들로 중역진을 구성해 국가적 관념을 관철하고자 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비능률적이어서 업적이 좋지 않았다며 통합회사는 능률이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역진을 구성해 국책회사의 장점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두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그간 전원개발에 큰 성과를 보여 왔던 일질계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역을 구성했다. 조선전업의 사장에는 野口遵의 강력한 후원을 바탕으로 일질의 조선내 전기사업을 총괄지휘했던 久保田豊이 임명되었고, 부사장에는 久保田의 전기기술부문 보좌역격인 玉置正治, 이사에는 久保田의 토목부문 보좌역격인 横地靜夫가 임명되었으며,⁸¹⁾ 나머지 중역들도 경남지사를 역임하고 당시는 동척 취체역이었던 山澤和三郎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질계로 채워져 “單一色”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⁸²⁾

79) 金谷要作, 『漢江水電思い出の記』, 『有賀さんの事蹟と思い出』, 同編纂會, 1955, 204~208쪽.

80)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320~324쪽.

81) 이들에 대해서는 『大自然を制壓せる電業巨人の生活記録(8)』, 『朝鮮電氣雜誌』 30-12, 1941.12, 22~25쪽; 永塚利一, 『久保田豊』, 電氣情報社, 1966; 久保田豊, 『財閥回顧録 6』, 大韓書籍公社, 1983;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587~594쪽 참조.

비록 총독부가 표면적으로 능률적인 회사 운영을 내세워 중역진을 일질 “단일색”으로 구성했지만, 이는 실상 새로이 탄생한 조선전업의 성격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같은 시기 일본에서 발송전 통합을 맡았던 일본발송전이 기존 전기회사들의 현물출자로 자본 구성을 이루고 새로이 중역진을 임명해 전혀 새로운 성격의 국책회사로서 탄생되었던 것과 달리 조선전업은 설립과정에서 일질계인 조선수전을 중심으로 자본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전술했듯이 조선수전, 조선송전과 부령수전 3사가 모체회사를 이루었는데 불입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조선전업의 주식 600만주, 60만주, 10만주를 할당받았다. 그런데 주지하듯 조선수전과 조선송전은 일질에서 장악하고 있는 회사였다. 총독부 보유주식이 13만 4,600주(2.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일질계가 장악했던 셈이다. 나머지 회사들의 매수는 주식 대신 사채를 지급했으므로 자본 구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총독부는 조선전업의 모체회사를 일부러 일질계 중심으로 구성해 자본구성에서 일질의 장악력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전력국가관리는 명목상으로는 국영을 지향했지만, 조선전업의 자본 구성과 중역진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는 일질 주도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총독부는 ‘일질 몰아주기’로 전력경영을 일질에 위탁한 셈이었다. 이는 일질이 전시하에 경금속, 인조석유, 항공연료와 각종 유기합성제품의 군납 등 군수품의 생산과 공급에 적극 나섰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⁸³⁾ 또한 조선수전 사장 久保田豊이 임시전력조사회의 석상에서 특수회사의 내용과 성격, 출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관리 이후 기존산업의 추진력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최종적으로 각의에서 통과된 요강에 특수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며 전기사업의 통합은 전시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총독부 관료들은 종래 전원개발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자에게 전권을 위탁해 충분히 능력을 발휘토록 하는 데에 ‘제2차 전력통제정책’의 목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질이 전원개발에서 다년간 축적한

82) 조선전업의 중역진은 사장 久保田豊(조선수전 전무), 부사장 玉置正治(조선수전 상무), 이사 横地静夫(조선수전 상무), 佐藤時彦(조선수전 상무), 林道太郎(조선수전 취체역), 감사 大島英吉(조선수전 취체역), 山澤和三郎(동척 취체역)이었다.

83) 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1995, 6장.

기술과 경험을 살린다는 이유를 들어 “가장 우수한 회사에 한국의 전력개발을 위탁시켜 國家와 함께 抱合하는 것”이라고 정책의도를 설명했다.⁸⁴⁾ 이는 재벌과 국가권력의 결합을 이르는 ‘官財抱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IV. 結 語

우리는 이상에서 1940년대 전반 전력국가관리의 수립을 둘러싸고 정책결정의 주체에 주목하여 정책의 원안이 등장하여 최종안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력국가관리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고찰하고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일제말 한국의 전력국가관리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당시 한국의 전력산업은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력통제정책의 결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통제정책의 주요 내용의 하나인 ‘송전간선 국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전회사들이 공기 지연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전시인플레이션 하에서 향후 개발 예정인 수력전원의 경제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군부와 혁신관료 사이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기도하려는 ‘전력국영론’이 제기되어 1939년에는 電氣廳 조직과 日本發送電 설립에 의하여 이른바 ‘제1차 電力國家管理’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엔블록 내에서의 일원적 통제를 위해 조선총독부에 전력국가관리의 시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총독부 전기과에서도 전력정책을 재검토하였지만, 일본정부의 전력국가관리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한국에서는 기존의 전력통제정책에 의거하여 양호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일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력국가관리 같은 ‘급진적’인 방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1930년대 초 전력통제정책 수립의 주역이었던 정무총감 今井田清徳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전기과장 今井頼次郎을 중심

84) 角永清, 『第2次電力統制に就て』, 『朝鮮』 336, 1943.5, 4~16쪽.

으로 한 기술관료들과 일부 문관, 그리고 今井田의 체신성 후배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체신국장 山田忠次 등이 이러한 견해를 취했다. 그런데 1938년 말 새로이 임명된 전기과장 白石光治郎과 병참기지정책을 통한 생산력확충을 중시했던 식산국 관료들은 전력통제의 강화를 주장해 체신국 기술관료들과 대립했다. 되도록 국가의 통제를 회피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력회사도 전력국가관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 배경에는 체신국 관료들이 퇴임 후 전력기업에 자리를 잡는 이른바 ‘낙하산인사(天降)’을 통해 형성된 관료-자본 유착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통제 강화에 대해 반대를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전력기근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력국가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1941년에 일본발송전의 강화와 배전회사 강제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전력국가관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조선총독부에 대한 전력국가관리 시행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그 결과 체신국 일각에서 통제요강을 작성하여 ‘朝鮮電力供給(가칭)’이라는 특수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체신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도 독자의 통제’ 주장이 이어졌다. 체신국과 식산국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에 총독부는 일본정부의 전력국가관리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처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제1과와 전기제2과를 체신국에서 식산국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하였다. 이후 전력국가관리는 식산국장 上瀧基의 주도 아래 강력하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력국가관리는 사실상 기존 발송전회사의 존폐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력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大東亞電力懇談會라는 관변단체를 조직해 이들을 압박하고, 조선총독부는 전력업계의 의견수렴을 명목으로 朝鮮臨時電力調査會를 개최했다. 그 결과 1942년 12월 31일 ‘朝鮮電力國策實施要綱’이 결정되고, 기존 전기회사의 합병과 사업 양수, 설비의 현물출자 등에 의해 발송전을 담당할 특수회사로서 朝鮮電業 설립이 추진되었다. 조선전업은 우선 조선수전, 조선송전, 부령수전 3개사를 모체로 하여 창립되고 이후 나머지 발송전회사 6개사를 매수 혹은 합병하여 통합을 완료하였다. 조선전업은 기존에 체신국에서 검토한 ‘조선전력공급’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전력공급’은 기존 전력회사로부터 기존 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 채 신규 수력발전설비와 주요 화력발전설

비, 그리고 주요 송전설비를 현물로 출자케 해 설립될 계획이었지만, 조선전업은 일질계의 전력회사를 모체로 창립하여 다른 전력회사를 모두 매수 혹은 합병하는 형태를 취했다. 말하자면 조선전력공급은 일본의 '제1차 전력국가관리' 때에 설립한 일본발송전처럼 발송전 일부를 통합한 형태였다면, 조선전업은 이와 달리 한국 내 발송전회사 모두를 통합한 거대기업으로서 자본금과 자산 규모에서 조선전력공급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설립된 조선전업은 주식의 대부분을 일질에서 장악하고 증역진의 대부분을 일질 출신으로 채우고 맡았다. 총독부는 표면적으로는 전원개발에서 다년간 축적한 일질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전력개발을 일질에 위탁한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당시 전력산업에서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일질의 반발을 무마하고 일질과의 유착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국책회사의 재벌 위탁은 재벌과 국가권력의 결합을 이르는 '官財抱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요컨대, 일본정부는 1930년대 말 이후 전력국가관리를 시행하면서 엔블록 내에서의 일원적 통제를 위해 조선총독부에 지속적으로 전력국가관리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조선총독부 관료는 '낙하산인사(天降)'을 통한 관료-자본 유착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의 전력통제정책에 의거한 '자치통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내에서의 전력국가관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력국가관리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을 때, 조선총독부는 국책회사[朝鮮電業] 설립을 통해 전력국가관리의 틀은 받아들이면서도, 국책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사실상 일질에 위탁하고 통합대상 회사의 자산 과대평가를 묵인함으로써 전력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했다. 조선전업으로 대표되는 일제말 전력국가관리체제는 결국 일본정부-총독부 관료-전력업계 삼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의해 일본과는 다소 다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 『毎日新報』 『京城日報』 『朝鮮商工新聞』.
- 『朝鮮電氣協會雜誌』 『朝鮮遞信』 『朝鮮鐵道協會會誌』 『京電』.
- 『朝鮮』 『朝鮮公論』 『朝鮮實業』 『朝鮮總督府官報』.
- 條木敬雄, 『躍進途上にある朝鮮電氣事業の概観』, 朝鮮電氣協會, 1937.
- 『公文類聚 第66編』.
- 『大同亞國土計劃を語る』, 日刊工業新聞社, 1942.
- 『電氣事業概況』, 朝鮮總督府, 1942.
- 『第30回 電氣事業要覽』, 朝鮮總督府殖産局, 1943.
- 『朝鮮産業の決戦再編成』, 東洋經濟新報社, 1943.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 東洋經濟新報社, 1942.
- 『朝鮮電力管理令及附屬法規』, 朝鮮總督府, 1943.
- 『朝鮮電力統合關係綴』.
- 『朝鮮電氣統制ニ關スル意見書』, 遞信局電氣課, 1939.9(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 『朝鮮の電氣事業』, 朝鮮總督府遞信局電氣課, 1938.8(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 『電力國家統制ニ關スル諸要綱』, 朝鮮總督府遞信局(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82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에 수록).
- 『第86回 帝國議會說明資料』,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23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
- 『朝鮮臨時電力調査會總會議事録』, 朝鮮總督府殖産局, 1943.
- 阿部黨, 『朝鮮人物選集』, 民衆時論出版部, 1934.
- 鳴元勸, 『朝鮮財界の人々』, 京城日報社, 1941.
- 『有賀さんの事蹟と思い出』, 同編纂會, 1955.
- 永塚利一, 『久保田豊』, 電氣情報社, 1966.
- 久保田豊, 『財閥回顧録 6』, 大韓書籍公社, 1983.
- 安達遂, “回想記,” 『朝鮮半島電氣事業の思い出』, 景福電友會, 1983.

- 『韓國電氣百年史 上』, 韓國電力公社, 1989.
- 朴基柱, “1930年代 朝鮮産金政策에 關한 研究,” 『經濟史學』 12, 1988.
- 李鴻植, 『朝鮮電業株式會社十年史』, 朝鮮電業株式會社, 1955.
- 金景林, “1930년대 植民地 朝鮮의 電氣事業,” 『史學研究』 42, 한국사학회, 1990.
- 金仁鎬, “太平洋戰爭期(1940~1945) 日帝의 朝鮮 公業統制와 生産力 확충,” 『韓國史研究』 90, 1995.
- 김경립, “식민지시기 독점적 전기사업체제의 형성,” 『梨大史苑』 32, 1999.
- _____, “식민지시기 조선의 독점적 전기 공급구조와 공업구조의 기형화,” 『梨花史學研究』 28, 2001.
- _____, “日帝末 戰時下 朝鮮의 電力統制政策,” 『國史館論叢』, 66, 1996.
- 김민철, “전시체제하(1937~1945) 식민지 행정기구의 변화,” 『韓國史學報』 14, 2003.
- 김인호, 『太平洋戰爭期 朝鮮工業研究』, 新書苑, 1998.
- _____,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2004.
- _____,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강화정책-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특질과 관련하여,” 『東方學志』 138, 2007(방기중, 『식민지파시즘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에 재수록).
- _____,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2005.
- 裒城浚, “일제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韓國文化』 27, 2001.
- _____, “전시체제기(1937~45) 纖維工業의 통제와 工業組合,” 『韓國民族運動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7.
- 小林英夫, “總力戰體制와 植民地,” 『日帝末期 파시즘과 韓國社會』, 청아출판사, 1988.
- 오선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전력시스템 전환-기업용 대형 수력발전소의 등장과 전력망 체계의 구축,” 『한국과학사학회지』 30-1, 2008.
- 이형식, “야마나시총독시대의 조선총독부,”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하)』, 제이앤씨, 2010.
- 張基鉉, “植民地期 電力事業과 工業化의 展開,”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7.
- 『電力百年史』, 政經社, 1980.
-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三元社, 2008.
- 堀和生, “植民地朝鮮の電力業と統制政策-1930年以後を中心に,” 『日本史研究』 265, 1984(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1995에 재수록).
- 橘川武郎, 『日本電力業發展の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 梅本哲世, 『戰前日本資本主義と電力』, 八朔社, 2000.
- 木村健二, “朝鮮總督府經濟官僚の人事と政策,” 『近代日本の經濟官僚』, 日本經濟評論社, 2000.
-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 電氣事業講座編輯委員會 編纂, 『電氣事業發達史』, 電力新報社, 1996.
- 中瀬哲史, 『日本電氣事業經營史』, 日本經濟評論社, 2005.
- 河合和男, “第二次水力調査と朝鮮總督府官僚の水力認識,”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A Study on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Jinseok Oh*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policy during the early 1940's. The Japanese government commenced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with the foundation of the Electric Power Administ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electric generation and transmission Co. during the late 1930's, and ordered the unitary control over the electric power to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for the formation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system over the whole Yen-Block. However, the officials of the Chesinguk [Communication and Postal Bureau] disapproved this order with mentioning the achievement of existing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The Real Reason was amakudari[天降] of the officials of the Chesinguk.

The colonial government could not refuse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no more by the strengthening of the order of Japanese government. The colonial government made the Siksanguk [Industrial Promotion Bureau] prepare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by reassigning the Electric Dept. from the Chesinguk to the Siksanguk. Meanwhile, the electric

* Associate Professor, Appenzelle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aichai University, e-mail: jamesoh@pcu.ac.kr

companies wanted to evade the national control and maintain their monopolistic positions. The colonial government held the Choseon imsi jeollyok josahoe [Temporary Survey Committee on Choseon Electricity] and heard the opinions of the electric companies. Consequently the Choseon Electric Management Act was proclaimed and the Choseon Jeonup Co. [Choseon Electric Co.]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ion of the electric generation and the electric transmission companies. By the way,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newly established Choseon Electric Company was entrusted the Japanese Nitrogen or the Japanese zaibatsu as a matter of fact. This case showed “the government-zaibatsu combination”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KRF Classification: B030106

Key Words: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system,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the Choseon imsi jeollyok josahoe [Temporary Survey Committee on Choseon Electricity], the Choseon Electric Management Act, the Choseon Jeonup Co. [Choseon Electric Co.]